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신수민
전화 054-530-4334

보도자료
2024. 10. 23.(수)

제 목 ○○시 안전재난물품 납품비리 및 감사무마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(지청장 박수민)은 ○○시 공무원의 안전재난물품 납품비리 및 이에 대한 ○○시장 등의 감사무마 사건을 수사하여,
 - ○○시의 납품담당자로서 관내 납품업체와 공모하여, 물품대금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○○시로부터 5년간 5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후 불법수익인 납품대금을 나눠 가진 前 ○○시 공무원 A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로 구속 기소하고, 공범인 납품업체 대표 3명(B, C, D)을 사기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 - 한편, ○○시 감사기구의 장(기획예산실장) 및 감사팀장인 G, H로부터, A의 허위검수조서 작성 등 비위를 보고받고도 A의 사직서만 제출받고 추가 감사 및 수사의뢰(고발)를 통한 사실관계 확정, 법령상 처리기준에 따른 변상명령(환수),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감사를 중단하게 한 ○○시장 E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, E의 지시에 따라 즉각 감사를 중단하고 A에 대한 비위를 적발한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경상북도에 허위 보고한 前 ○○시 기획예산실장 G, 前 ○○시 감사팀장 H를 직무유기 등으로, 허위 보고에 가담한 前 ○○부시장 F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.
-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앞으로도 지역토착비리 등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습니다.

I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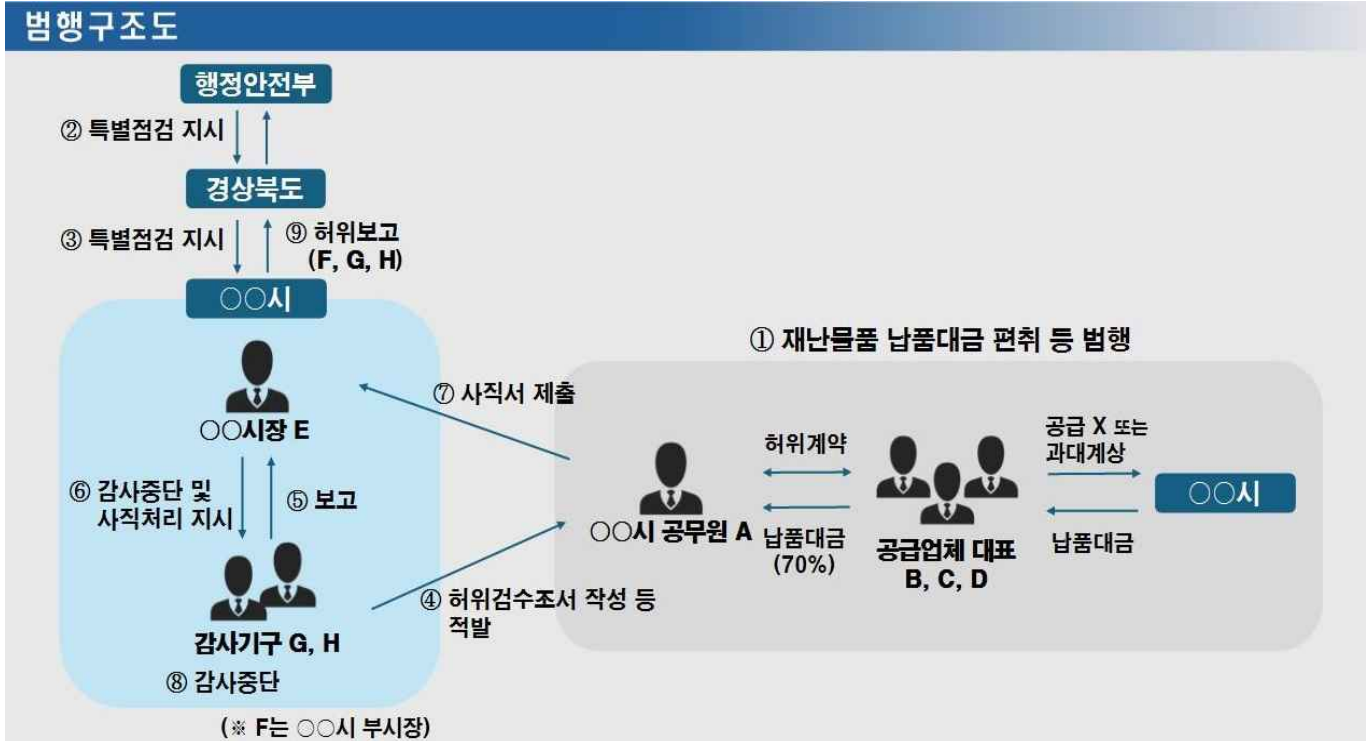
연번	피고인	공소사실 요지	비고	처분
1	A (37세, 前 ○○시 안전재난물품 납품담당 공무원)	- '20. 4.경~'23. 4.경 156회에 걸쳐 물품납품에 대한 검수 조서 허위작성 [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, 공전자기록 등위작 및 동행사] * 사기 범행 167회 중 허위 검수조서 실물이 확보된 156회를 기소	31회 경찰송치 125회 검찰인지	구속 구공판 (24. 4. 17.)
		- B, C, D와 공모하여, '19. 8.경~'23. 4.경 허위 물품 납품계약을 통해 피해자 ○○시를 기망하여 총 167회에 걸쳐 합계 약 5억 9천여만 원 편취 [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	검찰인지	
2	B, C, D (납품업체 대표)	- A와 각각 공모하여, 127회에 걸쳐 3억 9천여만 원 (B), 34회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(C), 6회에 걸쳐 1천 7백여만 원(D)을 편취 [사기]	검찰인지	불구속 구공판 (24. 4. 17.)
3	E (72세, 現시장)	- '23. 4.경 A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사실을 감사기구의 장(G) 및 감사팀장(H)으로부터 보고받게 되자, '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' 라고 지시하여, G, H 및 감사팀원들의 A에 대한 감사 활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]	검찰인지	불구속 구공판 (24. 10. 23.)
4	F (59세, 前부시장)	[F, G, H의 공동범행] - '23. 5.경 A의 비위사실을 제외하고 「사무관리비 집행실태 특별점검 결과보고」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후 경상북도 감사관실에 발송 [허위공문서작성,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] [G, H의 공동범행]	검찰인지	불구속 구공판 (24. 10. 23.)
5	G (59세, 前기획예산 실장)	- 경상북도 특별점검 지시에 따라 ○○시의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 자체점검 중 A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도, E의 지시를 받고 '23. 5.경 A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감사 및 후속조치를 중단하여 감사기구의 장(기획예산실장) 및 감사팀장으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적정한 감사결과 도출, 후속조치 등을 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 [직무유기]	검찰인지	불구속 구공판 (24. 10. 23.)
6	H (51세, 前감사팀장)	[H의 단독범행] - '23. 4.경 A에 대한 감사 중 납품업체 대표인 D에게 A에 대한 감사 진행상황을 누설 [공무상비밀누설]	검찰인지	불구속 구공판 (24. 10. 23.)

II 주요 수사경과

- '23. 9. 21. 사경, 前 공무원 A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건 송치
 - ※ 자체 첩보 입수하여 수사 착수 후 '물건은 실제 납품받았으나 업무량이 과도하여 검수조서만 허위로 작성했다'는 A의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B, C, D의 진술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만 송치
- '24. 2.~3. 당청, 납품업체 및 ○○시청 압수수색
- '24. 3. A 구속
- '24. 4. 17. A 구속 기소 및 B, C, D 등 3명 불구속 기소
 - ※ '24. 9. 26. 1심 선고 : A(징역 2년) 등 모두 유죄 선고
(검찰 양형부당 항소하여 각 2심 중)
- '24. 3.~9. ○○시청 및 관련자들 주거지 등 압수수색, 관련자 조사 등
- '24. 10. 23. E, F, G, H 등 4명 불구속 기소

III 수사 결과 및 의의

1 수사 결과



[납품비리 관련 범죄]

- ○○시청 물품구매담당 공무원 A는 2019.경 관내 안전재난물품 공급업체 대표 B, C, D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하면서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득액 중 70%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,
 - 이에 따라 A는 B, C, D와 함께 그때부터 2023. 4.경까지 167회에 걸쳐 합계 5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하였음
 - 그 과정에서 A는 B, C, D로부터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의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였으며, 허위계약을 체결한 물품의 상당수는 이들 업체가 실제 취급하지 않는 물품임이 확인되었음

[감사무마 관련 범죄]

- ○○시청 감사담당자인 G, H는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의 특별점검 지시에 따라 2023. 4.경 ○○시의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전수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, A가 ○○시 명의로 특정 업체로부터 반복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동일한 납품 사진을 증빙서류로 사용하고 실제 ○○시에 보관된 납품 물품 수량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, 실제 납품받지 않거나 수량을 과대계상하는 등 허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한 정황을 적발하였음에도,
 - ○○시장 E의 지시에 따라 A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고 A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원면직 처리함으로써 수사의뢰, 징계, 환수조치 등 법령상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A의 비위가 없었던 것처럼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었음
- 또한, 경상북도 지시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행실태 전수점검 과정에서 해당 비위가 적발되었던 것을 숨기기 위해, ○○시 부시장 F 및 위 G, H는 A의 비위 적발사실을 제외하고 작성한 허위의 '특별점검 결과보고서'를 순차 결재한 후 전자공문을 경상북도에 발송하여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 및 행사하였음

② 수사 의의

- 공무원이 특정업체와 결탁한 '지역토착비리' 엄단

- 본건은 ○○시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지역 내의 특정업체와 결탁하여 허위거래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인 국고를 편취하고 취득한 불법수익을 업체와 나눠 가진 전형적인 ‘지역토착비리’ 사건임
- 검찰은 A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사건을 송치받은 후, A가 특정업체로부터 단기간에 동일 품목을 반복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체 관계자와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, 거래업체 및 ○○시청을 직접 압수수색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하여, 담당공무원과 특정업체의 유착관계를 확인하고, 5년 동안 약 5억 9천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한 사실을 규명하여 엄단하였음
- 뿐만 아니라, A가 수년동안 허위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결재권자인 담당부서장을 포함한 ○○시에서 위 범행을 인지조차도 하지 못하였는바, 관급 계약의 구조적인 문제점 및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업무태도를 확인하였음

● ‘지자체 감사무마’ 적발

- 또한, 검찰은 ○○시가 상급관청의 지시에 따른 감사 과정에서 A의 허위검수조서 작성 등 비위를 적발하였음에도, 법령상 요구되는 A에 대한 수사의뢰(고발)나 징계 등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의원면직(사직) 처리된 경위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관련 수사를 면밀히 진행함으로써,
- 시장 E가 감사담당자에 대한 지휘권이라는 직권을 남용하고, 감사담당자인 G, H는 그와 같은 지시에 응하여 감사담당자로서 감사를 진행하여 적정한 감사 결과를 도출하고 법령상 처리기준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, 부시장 F 및 위 G, H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에 보고하는 등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배한 ○○시의 감사무마 전모를 규명하였음

IV

향후 계획

- 검찰은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향후에도 지역토착형 및 직무관련 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 ☑